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투자신탁명칭: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	투자신탁명칭: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<u>자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</u>
	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7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7. <u>좌동</u> (신설) 8. “모자형”이라 함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생략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 <u>좌동</u>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	

- KB 베스트 모아드림 혼합자산 자투자신탁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8. 생략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글로벌 M&A 차익거래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재간접형)</p> <p>나. KB 글로벌 알파 오피튜니티 증권 모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</p> <p>다. KB 코리아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라. KB 헤지펀드 솔루션 혼합자산 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</p> <p>마.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모투자신탁(USD)(채권-재간접형)</p> <p>바.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사.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모투자신탁(재간접형)</p> <p>아. KB 액티브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자. KB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차. KB 연금플랜 국내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카. KB 아메리칸센추리 글로벌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(USD)(주식)</p> <p>타. 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8. 좌동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삭제</p> <p>나. KB 글로벌 알파 오피튜니티 증권 모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</p> <p>다. KB 코리아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혼합)</p> <p>라. 삭제</p> <p>마.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모투자신탁(USD)(채권-재간접형)</p> <p>바.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사.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모투자신탁(재간접형)</p> <p>아. KB 액티브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자. KB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차. KB 연금플랜 국내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카. KB 아메리칸센추리 글로벌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(USD)(주식)</p> <p>타. 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(신설) <u>파.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</u></p>
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③생략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③좌동</p> <p>④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	

- KB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부책임: 심찬보 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부책임: 김보람

- KB 베트남 인덱스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

- KB 차이나H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생략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부책임: 심찬보 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부책임: 김보람

- KB 유로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생략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
투자설명서	부책임: 심찬보	부책임: 김정아
	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스타 이머징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- KB 연금 이머징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생략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책임: 임승관 부책임: 심찬보	책임: 김정아 부책임: 김보람
	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생략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
투자설명서	부책임: 심찬보 수익률 변동성: 11.70%	부책임: 김정아 수익률 변동성: 13.49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(재간접형)(H)/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(재간접형)(UH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허재웅 부책임: 이덕주/염보선	책임: 염보선 부책임: 이덕주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2. 변경일: 2020년 07월 15일(수)